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73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3
2.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신설	37

I. 개요

1.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73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7.

(3) 회 부 일 : 2025. 3.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신 설>	☐ 국가전 략기술 사 업 국내생 산 촉 진 을 위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전략산 업 국 내생산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전략산 업 국 내생산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국가전 략기술 활 용 생 산 재화에 대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국가전 략기술 사 업 국내생 산 촉 진 을 위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국가전 략기술 사 업 국내생 산 촉 진 을 위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국가전 략기술 사 업 국내생 산 촉 진 을 위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국가전 략기술 사 업 국내생 산 촉 진 을 위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국내생 산촉진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 신성장 · 원천 기 술 및 국 가전략 기술사 업 국 내생산 촉진을 위 한 세액공 제 신 설 (안 제100 조 의 35)
	○공제대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공 제대 상: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 송수단,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첨단기 술을 활용 한 제품(이 하 “전략 산업제품”) 에 관한 생산업 을 영위하 고 있는 내 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최종생 산하여 국내에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 기술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 는 첨단기 술을 활용 한 제품(이 하 “전략 산업제품”) 에 관한 생산업 을 영위하 는 내국 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국내 에서 전 략산업 제품을 생산하 여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이동·운 송수단, 바이오의 약품 등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재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 송수단,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수소관 련제품, 미래형 운송 이동수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재생 에너지 설비, 이 차전지, 전기자 동차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재화 를 생산 하여 국 내에서 판매하 는 경우 그 생산 량 또는 생 산비용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 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 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 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 품, 미래 형 운송 및 이동	내국인이 공제요건 을 갖추 어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전기자 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 동수단, 철강관 련재화, 그 밖에 국내 생기 반유 지 가 국가 경 제 안 보 및 공 급 안 정 화 에 필 수 적 이 라 고 인 정	신성장· 원천기술 과 국가 전략기술 을 활용 하여 제 품을 생 산 하 는 사 업 을 영 위 하 고 있 는 내 국 인 이 공 제 요 건 을 가 추 어 탄 소 중 립, 항 공·우 주, 첨 단 소 재 ·부 품· 장 비, 방 위 산 업, 발 전 시 스 템, 원 자 력 등 신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바이오 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전락산업제품 판매가격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락산업제품 판매가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화(이하 “국가 전략기술재화”)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출고가격의 최 10% 이내에서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국가 전략기술재	바이오 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	단, 바이오 의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		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	되는 재화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수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을 하여 산한 액	성장·원천기술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생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판 매 된 전략산업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 사 용 되 지 아니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경 우에 배 제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화 생 산 비 ”) 에 재 화 별 공 제 율 을 공 하 여 계 산 한 금액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산비용 ○공제요건: 다음 요 건을 모 두 충족 하는 경 우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소 재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제 품 이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제 품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소 재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소 재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내국 인에 의 하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제 품 이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 될 것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국 인에 의 하여 생 산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생 산 공 정 이 국내 에 소 재 한 생 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재 화 가 국 가 전 략 기 술 을 활 용 한 사 업 을 영 위 하 는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최종 제 조 공 정 이 국내 에 소 재 한 제 조 시 설 에서 이 루 어 질 것	① 해당 재 화 가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 될 것	① 해당 재 화 가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 될 것	① 해당 재 화 가 대 통 령 으 로 정 하 는 바에 따 라 국내 에서 생 산 될 것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③ 해당 재 화 가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③ 해당 제 품 이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③ 해당 재 화 가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④ 재료 비 중 내 국 인 에 의하 여 국내 에서 제 조된 소 재 · 부 품·원재 료의 비 용이 차 지 하 는 비 중 이 업 종 별 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③ 해당 재 화 가 그 생 산 일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의 개 시 일 로 부 터 소 급 하 여 5 년 이 내 의 기 간 중 에 종 료 하 는 과 세 연 도 에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 의		③ 해당 제 품 이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② 해당 재 화 가 국 내 에 서 최초 로 사용 될 것	② 해당 재 화 의 생 산 에 사 용 된 부 품 · 소 재 · 장 비 중 내 국 인 이 국내 에서 생 산 한 부 품 · 소 재 · 장 비 의 비 중 이 대 통 령 령 으 로 정	③ 해당 재 화 가 그 생 산 일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의 개 시 일 로 부 터 소 급 하 여 5 년 이 내 의 기 간 중 에 종 료 하 는 과 세 연 도 에 제 10 조 제 1 항 제 2 호 의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 제 율: 15 % (김 태 년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 20 % (정 일 영 의 원 안)	○공 제 율: 10%	○공 제 율: 판 매 가 격 의 10% 이하	는 비 율 이 상 일 것 ○공 제 율: 10%	국가 전략 기술 사업 에 따른 세 액 공 제 를 신 청 한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위탁 포 함) ○공 제 율: 10%	국가 전략 기술 사업 에 따른 세 액 공 제 를 신 청 한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위탁 포 함) ○공 제 율: 15%(대 기 업) 20%(중 견 기 업) 25%(중 소 기 업) * 단, 중 소 기 업 또 는 중 견 기 업 이 최 초 로 중 소 기 업 또 는 중 견	하 는 기 준 을 초 과 할 것 ○공 제 율: 대 통 령 령 정 품 감 으로 하 는 목 별 면 율	하 는 기 준 을 초 과 할 것 ○공 제 율: 생 산 비 용 의 30% 이 하 범 위 에 서 대 통 령 령 정 품 감 으로 하 는 목 별 면 율	하 는 기 준 을 초 과 할 것 ○공 제 율: 대 통 령 령 정 금 액 으로 하 는	국가 전략 기술 사업 에 따른 세 액 공 제 를 신 청 한 내 국 인 에 의 하 여 제 조 될 것 (위탁 포 함) ○공 제 율: 10 % (수 도 권 밖 의 지 역 에 서 생 산 하 는 경 우 20%)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 촉진 을 위한 과 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 해당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20%	○공제한도: 해당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10%	○공제한도: 해당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3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 촉진 을 위한 과 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기업에 해 당하지 않 게 된 경 우 3년간 기존 공제 율 적용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 촉진 을 위한 과 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 해당 과 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의 40%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 협력 촉진 을 위한 과 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한도: 내국인의 해당 과 세연도별 소득세 또는 법 인세 (「법인 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 의 32에 따른 투	○공제한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 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 제100조 의 32에 따른 투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추 징 세액 은 제외 하고,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10% (김 태 년 의 원 안), 20 %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 단, 해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추 징 세액 은 제외 하고,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10%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추 징 세액 은 제외 하고,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25%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추 징 세액 은 제외 하고,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30%	자 · 상 생 협력 촉 진을 위 한 과세 특 레 를 적용하여 계 산 한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추 징 세액 은 제외 하며,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20%	자 · 상 생 협력 촉 진을 위 한 과세 특 레 를 적용하여 계 산 한 법 인 세 , 가 산 세 및 대통 령령으로 정 하 는 추 징 세액 은 제외 하며, 대 통령령으 로 정하 는 세액 공제 등 을 하지 아 니 한 법 인 세) 의 10%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당 과세연 도 법인세 가 공제총 액을 넘지 못할 경우 대 통 령 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한도 설정(정일 영 의원안, 신 영 대 의 원안)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까지 국 내에서 판 매 하는 경우 최 초 판매 연 도부 터 10년 이 내까지	○적용기한: 2035. 12. 31. 까지 국 내에서 판 매 하는 경우 최 초 판매 연 도부 터 10년 이 내까지	○적용기한: 2030. 12. 31.	○적용기한: 2028.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5. 12. 31.	○적용기한: 2030. 12. 31.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투자세액 공제액은 전체 공 제금액에 서 차감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이 재 화 생산 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 당 자산 에 대하 여 공제 받은 통 합투자세 액 공제 합계액을 5년간 균 등분 할 하 여 산정 금액을 공제	○ 해 당 사업연도 이 전 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 받은 자 산에 대 하여 감 가상각비 를 손금 으로 계 상한 경 우 해당 감가상각 비 상당 금액에 대한 세 액공제액 은 전체 공제액에 서 차감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20년간 이월공제 허용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최저한 세 적용 ○ 사후추징: 5년 이내 정 당 한 사유 없 이 국내 생 산 을 중 단 하 거 나 생산 시설 중 대 통 령 령	액 에 서 차 감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통합투 자세액공 제와 중 복 지원 배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김태년의원안)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 기술재화를 생산·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으로 정하는 비율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공제액 추정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시행일: 2026. 1. 1.

현 행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안도걸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박지혜의원안	박성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과 세 연 도 에 투 자 하 는 분 부 터 적 용 (정 일 영 의 원 안)									

* 김태년의원안 2025. 3. 7. 발의(의안번호 8735), 정일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5), 진성준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67), 안도걸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38), 신영대의원안 2025. 4. 17. 발의(의안번호 9937), 정태호의원안 2025. 6. 12. 발의(의안번호 10777), 김은혜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02),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박지혜의원안 2025. 9. 5. 발의(의안번호 12733), 박성민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24), 최은석의원안 2025. 10. 21. 발의(의안번호 13656), 윤영석의원안 2025. 10. 27. 발의(의안번호 13727)

가. 전략산업 등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반도체 등의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생산비용에 대하여(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태호의원안,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전략산업제품”)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최종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판매가격(진성준의원안) 또는 생산비용(안도걸의원안)에 대하여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지혜의원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하여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이고, 박성민의원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생산비용에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안은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판매 수

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한편, 세액공제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사후추징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안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신성장·원천기술사업 및 국가전략기술사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대하여 10%(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 2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및 김상훈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진성준의원안과 안도걸의원안은 3년 연속 결손금¹⁾이 발생한 내국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한 전략산업제품 중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정하여 전략산업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정태호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재화 생산비용 공제를 받은 내국인 중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 또는 접경지역²⁾에 소재하고 2년 연속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을 대상으

1)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이란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법인세법」 제14조제2항).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

로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개정안별 비교]

구 분	김태년 의원안	정일영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진성준 의원안	안도걸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박성민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최은석 의원안	윤영석 의원안
공제 대상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 등 국가전략 기술을 활용한 재화	재생에너지 설비, 이차전지 ,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인공지능, 소형모듈원 자로, 양자컴퓨터 및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철강 관련 재화, 그 밖에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국가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이 라고 인정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재화	탄소중립, 항공·우 주, 첨단소재 · 부품 · 장비, 방위산업, 발전시스 템, 원자력 등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운송·이 동 수단, 바이오의 약품 등 국가전략 기술사업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걸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제품
판매처	국내 판매분 한정								무관		국내 판매분 한정	무관
공제 수준	생산비 용의 15%	생산비 용의 20%	생산비 용의 15%	판매가 격의 10%	판매가 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출고가격 의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비용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	생산비 용의 3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감면율을 곱한 금액	생산비 용의 10%	생산비용 의 15%(중견 20%, 중소 25%)	판매수량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	생산비용 의 10% (수도권 밖은 20%)
공제 요건	① 내국인에 의하여 제조 ② 국내 소재 제조시설에서 최종 제조공정 진행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 ④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정 비율 이상일 것(정태호의원안)							① 국내 생산 ② 해당 재 화 가 국내에서 최 초 로 사용	① 국내 생산 ② 5년 이 내 에 국가전략 기 술 R&D 세 액공제를	① 내국인 에 의하여 제조 ② 국내 소재 제조 시 설 에 서 최종 제조 공정 진행	① 국 내 생산 ② 생산에 사용된 부 품 · 소 재 · 장비 중 내 국 인 이 국내 생산	① 국내 생 산 ② 5년 이 내에 국가 전 략 기 술 R&D 세액 공제를 신 청한 내국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신 청 한 내국인이 제조		비중이 대 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할 것	인이 제조
공제 한도 (소득세)	-			해당 과세연 도 소득세 의 20%	해당 과세연 도 소득세 의 1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30%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40%	-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의 20%	-
공제 한도 (법인세)	각 사업연 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단, 별도 한도 설정 가능)		해당 과세연 도 법인세 의 20%	해당 과세연 도 법인세 의 1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30%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40%	각 사업연 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30%	각 사업연 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1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0%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
적용 기한	2035. 12. 31.			2035. 12. 31. 까지 판매 시 최초 판매연도부터 10년 이내		2030. 12. 31.	2035. 12. 31.		2028. 12. 31.	2035. 12. 31.		2030. 12. 31.
기타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 투자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서 차감					-		최저한세 적용	-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받은 자산이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통합투자 세액공제 를 적용받은 자산에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재 화 생 산에 직 접 사 용되 는 경 우 해 당 자 산에 대 하 여 공 제 받 은 통 합 투 자 세 액 공 제 합 계 액 을 5 년 간 균 등 분 할 하 여 산 정 한 금 액 을 공 제 액 에 서 차 감	대 하 여 해 당 사 업 연 도 중 에 감 가 상 각 비 를 손 금 으 로 계 상 한 경 우 해 당 감 가 상 각 비 에 상 당 하 는 금 액 에 대 한 세 액 공 제 액 은 공 제 금 액 에 서 차 감
사 후 추 징	-										5년 이내 국내 생산 중단 또는 국외 이전 시 공제액 추징	-
미공제 금액	환급 불가	미공제금액 발생 시 환급		① 3년 연속 결손금 발생		① 2년 연속 결	환급불가			미공제금 액 발생	환급불가	

구 분	김 태 년 의 원 안	정 일 영 의 원 안	신 영 대 의 원 안	진 성 준 의 원 안	안 도 결 의 원 안	정 태 호 의 원 안	박 지 혜 의 원 안	박 성 민 의 원 안	김 은 혜 의 원 안	김 상 훈 의 원 안	최 은 석 의 원 안	윤 영 석 의 원 안
환급요건				②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생산 한 전략산업제품 중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한 정		손금 발 생 ② 수도 권과밀억 제 권 역 외 또는 접경지역 에서 생 산한 제 품에 한 정				시 환급		
환급률	-	100%	30%~100 %	50%			-			100%	-	
미공제 금액 제3자 양도특례	양도 불가	양도 가능		양도 불가			양도 불가			양도 가능	양도 불가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생산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국내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각국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2022년 8월에 제정하였음.

IRA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규정이 있는데, AMPC란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음³⁾.

AMPC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재화에 대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임.⁴⁾

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4. 10. 25.

4) 다만, 2025년 7월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안 통과에 따라 당초 2032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말 조기종료되었고,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세액공제 역시 2027년말 조기폐지가 예정되어 미래형 이동수단 생산 및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유인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단계와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단계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의 직접적인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자, 생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세제지원 제도가 구축되어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및 생산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셋째, 국가전략기술 등 생산세액공제와 더불어 환급 및 제3자 양도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손실 발생 또는 최저한세 등으로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됨.

손실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이후 실제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첨단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단계에 납부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미공제금액에 대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한 입법례는 없으나 ‘환급’과 유사한 구조의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⁵⁾, 자녀장려금 제도(CTC: Child Tax Credit)⁶⁾가 시행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투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분야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6)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4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공 제			추가 공 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둘째, 세액공제의 대상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각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할 경우 소요되는 생산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판매가격이나 판매량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공제대상 제품 및 생산비용의 범위 설정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원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⁷⁾.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신고 기준 국가전략기술 분야 통합투자세액 공제 수혜법인은 29개이고 R&D 세액공제 수혜법인은 51개이지만, 국세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수는 추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임.⁸⁾

또한, 공제대상이 최종재에 한정되는지,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중간재까지 생산비용 공제를 적용할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음.

한편, 다수의 개정안은 공제요건으로 해당 재화 또는 제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공제요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다는 이유로 해당 자동차 생산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8)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정확한 기업 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표본조사 등에 기반하여 추정한 결과 이차전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404개,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는 818개 정도임.

셋째, 김태년의원안 등 9건의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반면, 김은혜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판매 국가와 무관하게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국내 판매 요건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동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국내 판매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조세지출 규모 등을 감안한다면 국내 판매량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는 국내 판매 요건과 무관하게 생산비용 공제는 수입품에 대한 차별조치이므로 통상규범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연구용역을 통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넷째, 세액공제 환급특례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정일영의원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비일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⁹⁾ 동일한 특례를 중복적으로 규정¹⁰⁾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신영대 의원안은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특례 적용기한을 2035년 말까지 설

9) 정일영의원안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르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미공제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반면, 안 제144조의4에 따르면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동일한 환급 특례 적용이 가능함.

10) 안 제144조의2제2항, 제144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하고 있는 반면 환급세액 계산을 위한 비율에 대해서 2030년 말까지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섯째, 박성민의원안을 제외한 11건의 개정안은 신설하고자 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정일영의원안 등 6건의 개정안은 미공제금액의 환급 특례를 신설하고 있음.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¹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여섯째, 기획재정부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민, 농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11)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상황으로, 올해 말 연구용역 종료 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여부, 공제대상 등을 설정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지원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및 부처간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1. (미국) IRA 중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개요

* 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한 적격 부품**(eligible component)을 미국에서 생산 시* 세액공제 부여

* 관련이 없는 주체(unrelated person)에 판매되어야 함

○ **(적격부품)** 친환경 에너지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등

< '적격 부품' 정의 >

- 태양광·풍력 에너지 부품
- 인버터 (중앙 인버터, 상용 인버터, 풍력 인버터, 마이크로 인버터 등)
- 적격 배터리 부품 (전극활물질,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등)
- 적용 가능한 핵심 광물

○ **(세액공제)** 부품·핵심 광물별 상이

구 분	주요내용
배터리	(셀)35\$/kWh, (모듈)10\$/kWh
핵심광물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태양광	(모듈)7¢/W, (셀)4¢/W, (웨이퍼)12\$/m ² , (폴리실리콘)3\$/kg (넥시트)40¢/m ²
풍력	(블레이드)2¢/W, (나셀)5¢/W, (타워)3¢/W

※ OBBBA를 통해 적용기간 축소

* (배터리·태양광) '32년 유지, (핵심광물) 영구→'33년 단축, (풍력) '32→'27년 단축

2. (일본) 전략물자 국내생산 촉진세제 개요

- ☐ (취지) 디지털 전환, 친환경 등을 위해 수익성이 낮아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지원 적용
- ☐ (대상)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적 중요성이 큰 물자의 일본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24년 신설, '25.4월 시행)
- ☐ (규모)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공제규모는 제품별 상이), 감면 전 법인세(산출세액)의 **40% 한도**(반도체의 경우 20% 적용)

[전략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5개 분야)		■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재생항공연료(SAF***) *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철강 제품 / ** 식물·폐기물로 제조한 화학제품 *** Sustainable Aviation Fuel : 식용유·생활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만든 항공연료
세제 혜택	적용 범위	【 ①투자 비용 또는 ②생산·판매액 기준 중 더 적은 금액 】 ① 전략분야 생산설비 투자액(중전 미사용 자산으로 한정)의 당해 사업연도 감가상각액 ② 일본 내 전략물자 생산량(판매 전제)에 비례 ①(전기차) 40만엔/대, ②(반도체) 0.4~2.9만엔/개, ③(그린스틸) 2만엔/톤, ④(그린케미컬) 5만엔/톤, ⑤(SAF) 30엔/리터 ※ 다만, 7년차 75%, 8년차 50%, 9년차 25% 수준으로 공제액 경감
	공제 한도	■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0년간 법인세액의 반도체 분야 최대 20%, 나머지 4개 분야 최대 40% 한도로 세액공제 * '26.3.31까지 경산성에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필요
	이월 공제	■ (조건) 40% 공제한도 초과 등에 따른 미적용분 발생시 이월공제 ■ (한도) 반도체 최대 3년, 기타 4개 분야 최대 4년

- ☐ (추가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적용

- ① 전년대비 계속고용자 급여 등 지급총액 증가율 $\geq$ 1%**
- ② 국내 설비투자액 > 당기 감가상각총액의 40%**
- ③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세표준) $\leq$ 직전 사업연도 소득금액**
 ※ 기업 과세표준(이익분) 증가시 공제 미적용

2.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신설(박수민의원안, 이연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김상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등에 대한 환급 특례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신설) ○ 대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여 공제할 세액 중 ①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② 법인세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할 경우 * 단, 신영대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10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환급특례 적용 ○ 내용: -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이연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미공제금액에 기업유형 및 투자시점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신영대의원안) ①중소·중견기업: 50%(~'26), 70%('27~'28), 100%('29~'30) ②초기투자기업: 50%(~'26), 이후 100% ③그 외: 30%(~'26), 50%('27~'28), 70%('29~'30))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준용 ○ 사후관리: 투자완료일부터 5년(이연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김상훈의원안) 또는 7년(신영대의원안)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환급세액상당액 및 이자 상당가산액 납부 ○ 적용기한: 2027. 12. 31. (박수민의원안) 2028. 12. 31. (이연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2035. 12. 31. (신영대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세액공제 이월공제 미적용 ○ 시행일:

현 행	개정안
	2025. 1. 1. (박수민의원안) 2026. 1. 1. (이연희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신영대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적용례: - 국가전략기술의 지정시점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정규정 적용(이연희의원안)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박수민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정일영의원안, 김상훈의원안) -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신영대의원안)

* 박수민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73), 이연희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708), 김태년의원안 2025. 3. 7. 발의(의안번호 8735), 정일영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885), 신영대의원안 2025. 4. 17. 발의(의안번호 9937), 김상훈의원안 2025. 8. 18. 발의(의안번호 12218)

□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을 두려는 것임.

신영대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환급세액 계산 시 기업의 규모 및 투자시점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중소·중견기업 및 초기투자기업: 50%~100%. 그 외 기업: 30%~70%).

□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¹²⁾

세액공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 대규모 투자를 해도 실제 이익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최저한세의 적용¹³⁾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12) 대한상공회의소,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 2023.7.24.

13) 최저한세는 법인의 경우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이 적용대상이며, 부담하는 법인세는 다음 중 큰 금액임.

①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17%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2%,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 중소기업은 7%*)

* 중소기업 졸업 이후 3년 이내까지는 8%, 그 다음 2년은 9%

② 각종 감면 후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3.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한편, 각국은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의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에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을 2022년 8월에 제정하였음.

여기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세액공제의 직접환급(Elective 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Transferability)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됨.¹⁴⁾

직접환급은 첨단 제조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Credit), 탄소포집 및 제거 세액공제(Carbon Oxide Sequestration Credit) 등 3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고, 양도는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Credit) 등 12개 세액공제에 대해 적용됨.

직접환급이 선택가능한 3개 세액공제는 직접환급 대신 양도도 선택가능함.

14) IRA Title 1, part8, SEC. 13801. Elective payment for energy property and electricity produced from certain renewable resources, etc.에서 규정하고 있음.

[환급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에너지 세액공제 내역]

구분	직접환급	양도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Section 30C)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		○
탄소포집 및 제거 세액공제(Section 45Q)	○	○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U)		○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V)	○	○
상업용차량 세액공제(Section 45W)		○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X)	○	○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Y)		○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Section 45Z)		○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		○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C)		○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Section 48E)		○

자료: 조세재정연구원 「미국 - 에너지 세액공제 및 글로벌 최저한세 상호관계 검토」

[직접환급이 적용되는 IRA 상 세액공제 세부내용]

구분	내용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X)	- 미국, 미국령에 의해 생산되는 청정에너지 기술구성요소의 생산에 대해 세금공제 - 적합한 구성요소에는 태양광 부품, 풍력터빈 및 해상풍력 부품, 인버터, 배터리부품, 이러한 구성요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광물이 포함 - 배터리 및 태양광은 2032년말, 핵심광물은 2033년말, 풍력은 2027년말 혜택종료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Section 45V)	- 수소 1kg당 CO2 배출량이 4kg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단계 청정수소 생산인센티브 - 프로젝트 전과정(life-cycle)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이적을수록 많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 - 수소(H2) kg당 단계별로 0.12, 0.15, 0.2, 0.6달러(최대0.6, 0.75, 1, 3달러)의 생산 세액공제가 적용 - 새로운 프로젝트는 2033년까지 건설을 시작해야함
탄소포집 및 제거 세액공제 (Section 45Q)	-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Utilized)과 저장(Stored)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톤당 60달러, 85달러로 적용 - 2032년까지 지원

자료: 삼성증권, 외교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CCUS 지원 확대 동향 자료」, 외교부 「경제안보 Review 25-13호」 등 재구성

기업 입장에서는 공제가능 세액 전액을 돌려주는 직접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양도는 직접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세액 공제 부분 또는 직접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또한,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2022년 6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과시켰음. 이를 통해 마련된 첨단제조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 관련 첨단제조시설에 대한 적격 투자¹⁵⁾의 35%¹⁶⁾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익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신 직접환급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음.¹⁷⁾

또한, 캐나다는 청정수소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15%~40% 공제율이 적용되고 세액의 환급이 가능함.¹⁸⁾

□ 개정안은 손실 발생 또는 최저한세 등으로 세제혜택을 다 받지 못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15) 첨단제조시설은 1차적 목적이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 시설을 의미하고, 적격투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가동을 시작한 적격 자산 중 첨단제조시설의 일부가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함. 적격 자산은 납세자가 건설하여 첨단제조시설 작동에 필수적인 유형의 자산을 의미하며, 사무시설, 관리 업무 또는 제조와 무관한 다른 건물 등은 해당되지 않음.

16) 당초 25%였으나 2025년 7월 35%로 상향조정되었음(2025. 12. 31. 이후 가동되는 제조시설부터 적용).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의 국가전략적 가치 제고를 위한 R&D 조세제도 개선 방안」, 2023. 11.

18) To support and accelerate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in Canada Budget 2023 proposes to introduce a 15 percent refundable tax credit for eligible investments in: ① Non-emitting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s, ② Abated natural gas-fired electricity generation, ③ Stationary electricity storage systems that do not use fossil fuels in operation, ④ Equipment for transmission of electricity between provinces and territories. (A Made-In-Canada Plan: Affordable Energy, Good Jobs, and a Growing Clean Economy, 2023. 3. 28, p.79)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적극적인 투자에도 손실이 발생하거나 최저한세 등을 적용받는 기업은 세액공제의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의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기업의 손실이 경쟁력 부족으로 발생했다면,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직접환급 및 양도 제도를 도입하여 완화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한 입법례는 없으나 ‘환급’과 유사한 구조의 근로장려금 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¹⁹⁾, 자녀장려금 제도(CTC: Child Tax Credit)²⁰⁾가 시

19)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정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금액 등에 따라 차등화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최초로 고안되어 197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20)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4년부터 시행되었음.

「조세특례제한법」

행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환급·양도 가능 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이 86.7%인 반면, 제도를 도입하여도 투자를 증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7.2%로 나타나,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불분명함.

둘째, 손실발생 및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의 혜택을 해당연도에 온전히 다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최대 10년에 걸쳐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추후에 공제를 받아 지원효과가 나타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¹⁾

셋째, 환급·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환급과 양도 제도의 도입으로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7,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넷째, 최저한세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제도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²²⁾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더라도 세부담 형평성 및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다섯째,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에 대한 높은 세액공제율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초기에 대규모 세수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할 경우 서민, 농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요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22)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